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20
----------	-------

발의연월일 : 2026. 4. 6.

발 의 자 : 이원택·윤준병·주철현
오세희·허영·임호선
문금주·장철민·임미애
김한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분산에너지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적 성격의 지역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여 주민과의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배전망의 부족과 현행법상 배전망 접속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는 배전망에 우선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전사업자는 이들의 원활한 배전망 접속 운영을 위한 사항을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이익의 지역 환원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 신

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배전망접속을 차단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분산에너지사업(이하 “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배전망의 우선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 ② 배전사업자는 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원활한 배전망 접속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의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위한 배전망 증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전망 증설·운영 계획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한 사항을 제1항의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 포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위한 배전망 증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배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이행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

③ -----
-----제1항·제2항-----

④ -----

제3항에-----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4항에-----

과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